

규 칙 공 포 문

제2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19일

함평군의회 의장 

함평군의회 규칙 제21호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를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9조 제3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9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u>이의 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제69조(예산안 심의) ① ----- ----- 이 ----- 이 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p> <p>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p> <p>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제73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u>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제73조(결산의 심사) ① ----- -----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p> <p>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p> <p>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9조 제3항을 준용한다.</p>